

의안번호	2206719
의 퇴 인	김예지 의원
회 답 일	2025. 2. 13.
추 계 번호	24C5783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61조(노령연금 수급권자), 부칙 제2조(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), 안 제62조(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), 안 제63조의2(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)	등록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55세가 된 때부터 노령연금을 지급 ※ 다만, 1961~1964년 출생자는 58세, 1965~1968년 출생자는 59세,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에 지급 ※ 현행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5년 하향 조정 (조정된 수급 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간 수급 연기를 할 수 있고,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시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1조(노령연금 수급권자), 부칙 제2조(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), 안 제62조(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), 안 제63조의2(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일부 장애인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5세 하향 조정하는 경우, 보험료 수입 감소 및 급여 지출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음
 - (보험료 수입 감소)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일부 장애인의 노령연금 수급개시

연령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 가입기간이 단축되어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

- (추가재정소요)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일부 장애인의 의무 가입기간이 단축되는 경우, 실제 가입기간이 줄어들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 단가는 감소할 수 있으나, 수급개시 후부터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하는 연금급여의 특성상 지급 기간이 늘어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□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수급개시연령이 조정될 대상자 수와 해당되는 사람들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액 등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여 수입 감소분 및 재정 증가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- 안 제61조제1항은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할 구체적인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해당되는 사람의 수와 이들의 소득정보를 알 수 없음
- 개정안 시행 시 임의계속 가입을 선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을 연기하여 더 높은 연금액을 수급하기로 선택할 사람들의 수, 노령연금 수급 중에 소득이 있는 활동에 종사할 사람들의 수와 해당되는 사람들의 소득수준을 알 수 없음
 - 임의계속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가입기간이 길어져 연금 수급액 단가가 높아질 수 있고, 노령연금 수급 연기를 선택하는 경우 매 1년당 7.2%(월 0.5%)의 연금액 단가가 인상 적용됨
 -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간 소득이 있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그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됨
- 또한, 개정안 시행 시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노령연금 수급을 선택할 사람의 수와 그들의 생애소득수준을 알 수 없음
 - 현행 「국민연금법」 제56조는 2개 이상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,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1개의 급여만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,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도래 시 장애연금이 아닌 노령연금 수급을 선택할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는 관련 정보가 부재
 - * (참고)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장애등급을 받아 장애연금을 수급하는 도중에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면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선택할 수

있음. 이런 상황에서, 장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이전이라도 장애가 발생하면 지급하고,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일 경우 가입기간을 20년으로 간주하여 급여액을 산정하므로 노령연금보다 장애연金的 평균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, 노령연금 수급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님¹⁾).
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

1) 2024년 10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, 노령연금 평균 수급 금액은 65.5만원(특례 등 포함, 20년 미만 가입자에 대한 노령연금 평균액은 43.3만원)인데 반해, 장애1급에게 지급하는 장애연금은 평균 70.6만원, 2급에게 지급하는 장애연금은 평균 57.7만원으로 나타남